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07-제51호
----------	-----------

제출연월일 2007. 5. 29.

제 출 자 제갑생의원외4인

1. 의결주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와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함(안 제3조)
- 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안 제4조)
- 다.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함(안 제5조)
- 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안 제6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62조(보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제7조(급여내용 등), 제10조(급여비용 부담)

나. 소요예산 : 연간 50,000천원 정도

다.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 도내(9개 시·군) :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 통영시, 함양군, 김해시, 거제시, 진주시

※ 마산시는 현재 추진 중(의원발의)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자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 세대”라 함은 세대원이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시장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모·부자 세대”라 함은 「모·부자복지법」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5. “소년소녀가장 세대”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의 규정등의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모·부자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한다.

제4조(지원액)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세대 선정) 제3조의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등) 이 조례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

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기내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

제7조(조사)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자산상황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第6條 (加入者の 종류) ①加入者は 職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勤勞者 및 사용자와 公務員 및 敎職員은 職場加入者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4.1.29, 2006.10.4>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雇傭되는 日傭勤勞者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現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務員으로서 매월 報酬 또는 이에 준하는 給料을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勤勞者 및 사용자와 公務員 및 敎職員

③地域加入者は 加入者중 職場加入者와 그 被扶養者를 제외한 者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勤勞者 및 사용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職場加入者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제62조(보험료) ①公團은 健康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充당하기 위하여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의 納付義務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10.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6.10.4>

④職場加入者の 月別 保險料額은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率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06.12.30>

⑤地域加入者の 月別 保險料額은 世帶單位로 算定하되, 地域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月別 保險料額은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規定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006.10.4, 2006.12.30>

⑥삭제 <2006.12.30>

[시행일:2007.7.1] 제62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15, 2004.3.5, 2006.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모자복지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④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